

---

**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
기본연구 관련 Q&A**

---

**2020. 2.**

# 목 차

I. 신청자격 및 계획서작성 .....	1
II. 연구비 계상 .....	5
III. 기타 사업관련 .....	6

▶ **기본사항** (신청자격, 연구계획서 작성 등)

Q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?

A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\*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합니다. 따라서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\*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. 다만, 수행 중인 사업이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

\* 2015년 이전 선정된 공동연구원은 신청가능(예 : 중견연구 핵심(공동)과제의 공동연구원) 단, 후속신규과제의 공동연구원은 신청 불가

※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

▶ **교육부 소관 개인연구:** 학문후속세대지원(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, 박사후국내외연수/대통령Post-Doc./리서치펠로우), 학문균형발전지원(창의도전연구지원/보호연구/지역대학우수과학자), 개인기초연구(기본연구, 한국형SGER)

▶ **과기부 소관 개인연구:** 리더연구, 중견연구, 신진연구(신진/생애첫연구), 기본연구, 전략과제

Q 기본연구는 3책 5공의 적용을 받나요?

A 기본연구는 연간 평균 연구비가 5,000만원 이하인 과제로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.

**3책 5공 관련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**

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
5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\*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

\*연간 평균 연구비가 5,000만원 이하인 과제

- Q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?
- A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,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,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Q 교육부 소관 학문균형발전(창의도전·보호·지역)사업에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까?
- A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하는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Q 인문사회 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?
- A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Q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?
- A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병원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Q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하였는데 기본연구 신청이 가능하나요?
- A 신규과제에 선정된 경우는 불가능하지만,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Q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?
- A 기본연구는 단독연구로 연구책임자 1인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 다만, 참여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Q 참여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?
- A 학·석·박사급 연구원 또는 학부생 및 석·박사과정생인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. 또한, 동급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전문연구요원(병역특례)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?

A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Q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?

A 대학 부설연구소가 별도 법인 설립이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 부설연구소가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는 소속기관 연구전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 기관이 연구소가 아닌 대학일 경우 연구원은 비전임교원으로 간주

Q 접수기간(연구자 신청·주관연구기관 승인)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?

A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두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, 해당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.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,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.

Q 암맹평가 대상 과제 입니까?

A 아닙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기본연구는 연구자 역량 고려를 위해 암맹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
Q 대표적연구실적은 최근 몇 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해야하나요?

A 최근 5년 이내(2015.1.1.이후) 발생한 실적 중 대표적인 것을 5개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고, 더 기재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작성하실 때 “최근5년간 기타실적”에 리스트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.  
(접수 1~2일전 eRND매뉴얼 배포 예정)

※ 온라인에 입력하는 최근5년간 기타실적은 별도 요약문 및 증빙파일을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

Q 연구계획서 5페이지 분량에 표지 및 참고문헌이 포함된 분량인가요?

A 표지 및 참고문헌은 작성분량에서 제외하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

Q 글자 폰트 및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?

A 별도 제한은 없으며,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께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.

Q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?

A 국문요약문(온라인 입력)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.

Q 계획서의 「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·활용 동의서」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?

A 개인정보의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)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.(주관연구기관이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,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-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)

Q 연구계획서 항목 내 연구자의 연구 수행역량 작성요령 중 기 수행했던 한국형 Grant(2012년 이후 종료) 과제 연구성과 요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

A 2012년도부터 최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'한국형 Grant' 지원 방식 도입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간소화 및 결과평가를 미실시하였습니다. 이에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추후 과제 신청 시 기존 Grant 과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.

※ Grant 과제 수행이력 확인방법

1. 접수기간 내 : eRND 접수 시 “기 grant 수행 이력” 확인 가능
2. 접수기간 전 : eRND > 연구과제 > 수행과제 조회(사업년도 : 전체, 사업분류 : R1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)  
검색 후 아래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

※ 접수기간 내 기 Grant 수행 이력 확인 후 작성 권장

※ 해당사업 : 신진연구, 이공학개인기초연구, 학문후속세대, 중견연구(핵심\_개인), 중견연구(총연구비 3억원 이하) 등

Q 2020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(신진,중견,생애첫)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?

A 상반기 개인기초연구(신진, 중견)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1인

1과제 예외에 해당될지라도 개인기초연구 중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선정 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 과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

## ▶ 연구비 계상

Q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?

A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항목	유의내용
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함.</li> <li>•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경우, 외부인건비로 계상</li> <li>• 동급교수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불가</li> </ul>
학생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업 과정생만 기재함. 졸업자는 외부 인건비로 기재</li> </ul>
연구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건비의 20%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</li> <li>•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</li> <li>•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</li> </ul>

※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조

Q 연구비 산정 시 인건비와 타 비목의 편성비율 및 각각의 산정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?

A 인건비와 타 비목을 각각 어떤 비율로 편성해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항목에서의 금액계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. 연구책임자가 동 과제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 연구비 범위 내에서 계상합니다.

Q 내·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A 내·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.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. 여기서 연봉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

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로기준법, 해당기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.

- Q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'인건비'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? 그리고,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서 제한이 있습니까?
- A 직접비의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뿐만 아니라 미지급용 내·외부 인건비도 모두 포함됩니다. (연구지원 인력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)
  - ※ 연구비 집행 계획의 인건비 소계에 미지급용 내·외부 인건비는 합산되지 않는 금액이므로, 연구 수당 계상을 위해 연구비 집행계획의 인건비 미지급란에 미지급용 인건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연구수당은 연구지원 인력인건비를 제외한 지급,미지급 내·외부 인건비의 총합의 최대 20%까지 계상 가능합니다.

#### ▶ 기타 사업관련

- Q 2018년까지 지원된 기본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처는 어디인가요?
- A 2018년까지 지원된 이공학개인기초 기본연구는 교육부소관 사업으로, 계속과제의 경우 이공학술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
- Q 후속연구지원이 있는 사업인가요?
-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연구는 별도 후속연구지원이 없습니다.
  
- Q 총 연구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차년도가 9개월인데 잔여 3개월은 추후 지원이 되나요?
- A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 년도는 9개월분(2020.6.1.~2021.2.28.)을 지원하며, 잔여 3개월은 추후 지원하지 않습니다.
  
- Q 연구기간을 1년 신청한 경우 당해연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
- A 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 1차년도 협약기간은 2020.6.1.~2021.5.31.이며 총 12개월을 수행하게 됩니다.